

정책보고서 2007-06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 방안 연구

선우 덕
석재은
이주희
임정기
이수형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 방안 연구

선우 덕
석재은
이주희
임정기
이수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방안 연구”의 최종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머 리 말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실시에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전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보험료 부담에 상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는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양성되고 있는 간병인도 교육시간으로 보나 교육내용으로 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큰 문제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기능상태가 점차적으로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장기요양등급인정자가 어느 시설에 입소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시설측에서는 동일한 기능상태의 장기요양등급인정자를 입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용을 지불받게 되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및 기준을 재검토하고, 양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병인력을 교육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선우덕 박사의 책임하에 임정기·이수형 선임연구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이주희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지문을 해준 본 연구원의 오영희·김수봉 박사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개인의 의견이고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8
제2장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기준 개편내용	50
제1절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능 재정립	50
제2절 주요 국가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55
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운영기준	90
제3장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 기준내용	177
제1절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내용 기준	177
제2절 요양보호사의 교육양성기관 설치기준	208
제4장 결론	210
참고문헌	211
부 록	213

표 목 차

〈표 2- 1〉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준	51
〈표 2- 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준	52
〈표 2- 3〉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준	52
〈표 2-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안)상 시설급여서비스제공 시설 유형별 입소기준	54
〈표 2-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안)상 재가급여서비스제공 시설 유형별 입소기준	54
〈표 2- 6〉 일본의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기준	55
〈표 2- 7〉 일본의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기준(정원 30인 미만 시설, 4인실 중심 시설)	57
〈표 2- 8〉 일본의 유니트형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정원 30인 미만 시설, 개인실 중심 시설)	59
〈표 2- 9〉 일본 지정방문개호, 지정개호예방방문개호 기준	61
〈표 2-10〉 일본 기준해당방문개호 및 기준해당개호예방방문개호 기준	61
〈표 2-11〉 일본 지정방문입욕개호·지정개호예방방문입욕개호 기준	62
〈표 2-12〉 일본 기준해당방문입욕개호·기준해당개호예방방문입욕개호 기준	62
〈표 2-13〉 일본 방문간호 시스템 기준	63
〈표 2-14〉 일본 병원 및 진료소에서의 방문간호 기준	63
〈표 2-15〉 일본 지정통소개호, 지정개호예방통소개호(공통적 서비스) 기준	64
〈표 2-16〉 일본 기준해당통소개호, 기준해당개호예방통소개호(공통적 서비스) 기준	65
〈표 2-17〉 일본 지정개호예방 통소개호 및 기준해당개호예방 통소개호의 선택적 서비스의 가산산정요건	66
〈표 2-18〉 일본 요양통소개호의 인원·설비 기준	67
〈표 2-19〉 일본 단기입소 생활개호(개호예방 단기입소 생활개호)의 인원·설비기준 기준 (단독형, 병합형의 경우)	68

〈표 2-20〉	일본 유니트 형 단기입소 생활개호(개호예방 단기입소 생활개호)의 인원·설비 기준(단독형, 병설형의 경우)	69
〈표 2-21〉	일본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의 인원·설비기준	70
〈표 2-22〉	일본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 및 개호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의 인원·설비기준	71
〈표 2-23〉	일본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및 개호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의 인원·설비기준	72
〈표 2-24〉	미국 민간차원의 질 관리 평가내용	82
〈표 2-25〉	미국 장기요양서비스관련 질관리 지표(1)	83
〈표 2-26〉	미국 장기요양서비스관련 질관리 지표(2)	89
〈표 2-27〉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총 종사자수	105
〈표 2-28〉	일본의 양호노인홈 직원배치기준 (1998년 및 2005년 기준)	105
〈표 2-29〉	직원배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총 종사자수	137
〈표 2-30〉	일본 특별양호노인홈 인력배치기준의 변동 내용	138
〈표 2-31〉	일본 특별양호노인홈 인력배치기준 변동내용 (<표 2-30>에서 필요한 수를 기존의 인력으로 계산한 경우)	139
〈표 2-32〉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 재가서비스사업자의 직종별 상근환산 종사자수 (2005년 10월 1 일 현재)	140
〈표 2-33〉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 입소시설의 직종별 상근환산 종사자수(2005년 10월 1 일 현재)	141
〈표 2-34〉	일본의 개호보험적용 재가서비스사업소 종류별 상근환산 종사자수 상황 (2005년 10월 1 일 현재)	142
〈표 2-35〉	개호보험시설의 상근환산 간호·개호직원 1인당 재소자수 (각년도 10월 1 일 현재)	142
〈표 2-36〉	재가 개호급여내용별 상근환산 총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	143
〈표 2-37〉	시설 개호급여내용별 상근환산 총 종사자 1인당 이용자수	143
〈표 3- 1〉	신규 요양보호사 1·급 양성교육 대안별 장·단점 (1급 과정)	181
〈표 3- 2〉	신규 요양보호사 1급과정: 교육내용(기준안)	186
〈표 3- 3〉	신규 요양보호사 1급과정: 교육내용(참고 1안)	187
〈표 3- 4〉	신규 요양보호사 1급과정: 교육내용(참고 2안)	188

〈표 3- 5〉 신규 요양보호사 1급과정: 교육내용(참고 3안)	189
〈표 3- 6〉 신규 요양보호사 2급과정: 교육내용(안)	194
〈표 3- 7〉 기존 경력자대상의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총 교육시간 30시간)	198
〈표 3- 8〉 교육내용(총 교육시간 30시간)	203
〈표 3- 9〉 노인복지관련 교과목	205
〈표 3-10〉 기존 경력자에 보수교육 기준(요양보호사 1급 기준)	206
〈표 3-11〉 직종별 보수교육비교	207
〈표 3-12〉 요양보호사 교육양성기관 기준(시설설치 기준)	209
〈표 3-13〉 요양보호사 교육양성기관 기준(교수요원 기준)	209

도 목 차

[도 2-1] 보건의료 부문의 서비스 질 평가 활동의 목표	73
[도 2-2] 서비스의 질 범주에 따른 외부 개입의 유형 차이	74
[도 2-3] 질 평가 체계의 유형	75
[도 2-4] CMS MDS welcome page	78
[도 2-5] MDS file submission paget	79
[도 2-6] MDS activity report	79
[도 2-7] CMS 홈페이지를 통한 요양시설의 질적 수준 공개	80
[도 2-8] 요양시설 질 지표 목록(CMS)	81
[도 2-9] 가정간호의 질적 수준 검색 화면	81
[도 3-1] 신규 요양보호사 1급과정 대상자	190
[도 3-2] 신규 요양보호사 2급과정 대상자	195
[도 3-3]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존 경력자 대상(I)	200
[도 3-4]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경력자 대상(II)	204

요 약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사회적 환경 또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도 장기요양시설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또는 민간기관이 제공해 왔던 서비스의 인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다시 말하면,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있어서 기존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의 시설설치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서비스(간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써의 요양보호사(가칭)에 대한 교육양성기준 및 교육양성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음.

제 2 절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 첫째는, 전문가집단집중토의(Focus Group Interview)방식을 기초로 하여 수행하였음. 이러한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집단의 구성원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및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관계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 학계전문가들이며, 토의는 매주 1회씩 실시하였음.
- 둘째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 일본의 노인복지시설과 상당히 유사하고, 최근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개호보험시설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셋째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평가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내용의 적절성 등을 도출하여야 하나, 연구기간 등 여건상 제약이 있었음.

- 또한, 일본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복지수준 및 사회환경의 차이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음.

제 2 장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기준 개편내용

제 1 절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능 재정립

1.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그 유형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주거복지시설의 경우를 보면, 크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입소자격기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시설, 실비시설 및 유료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건강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basic activity of daily livings)상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 해석할 수 있음.
- 의료복지시설의 경우는, 크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입소자격기준(노인전문병원은 제외)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시설, 실비시설 및 유료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건강기준을 보면,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나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즉,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점수화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생활시설과 같이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 실비 및 유료시설로 유형화하지 않고, 모든 시설이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에서 서비스이용자격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되어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능상태의 장애수준이 일정한 정도를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중, 생활시설은 기능상태가 호전되거나 이용자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퇴소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과 가정간 중간형태의 시설로써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로써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당분간은 기존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그 이유는 기존의 재가노인복

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기능상태가 장기요양보호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증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신체적 수발행위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라기 보다는 가사지원이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재정립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재정립하고, 이차적으로, 비록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저소득대상자에 한하여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하여야 함.

4. 일본의 개호보험시설 기준

-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시설서비스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노인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택서비스의 경우에는 개호급여를 제공하는 시설과 개호예방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함.

제 2절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운영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

-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이는 생활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장기요양인정자에 한하여 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방문재가서비스를 수급할 수는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입소정원 10인 미만의 시설에 한하여 별도의 명칭인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양로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함.
 - ②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이는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체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이용함으로써, 토지나 건물의 원래 소유자의 의향에 따라 시설이 폐쇄당하거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손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③ 시설설비의 명칭은 용도에 부합되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으로 함. 예를 들면, 취침이나 이용자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광의의 개념을 지닌 거실에서 침실로 바꾸는 것임.
 - ④ 시설설비의 설치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매우 낮고, 형식적인 사용위주로 운영되는 설비에 한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적인 용도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으로 함.
 - ⑤ 시설설비 중에서, 서비스제공이 시설자체가 아닌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시설설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함.
 - ⑥ 개정된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5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⑦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만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에게 높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종사자의 명칭은 가능한 한, 실제의 업무나 자격증에 고지되어 있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함.
 - ② 시설의 서비스수준, 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즉, 현행 사회복지사의 유형이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3급 자격증의 폐지에정도로 2급 이상의 자격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상담 및 서비스계획(care plan)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

는 자에 대해서는 최상급(1급)의 자격기준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함.

- ③ 또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과의 자격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④ 직원의 배치수준은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는 직원으로 충당하고, 현행 시설운영비용의 국고지원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시설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⑤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허용하되, 허용되는 직종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겸직이 허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⑥ 실제로 시설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이 어려운 직원, 또는 유사업무의 세분화 및 효율도가 인정된 직종에 한해서는 축소 및 확대 조치를 함.
 - ⑦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2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셋째, 시설운영기준에 대해서는,
- ① 현재 시설의 여건과 실제적인 활용성을 근거로 현실성 있게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함. 즉, 의료인에 대한 범위는 의료법,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각각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함.

■ 상기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에 기초로 하여 개선된 시안은 본문을 참조바람.

〈표 2-1〉 주요 개선내용

기준	현행	개선안
1. 시설기준		(경과조치 5년 적용)
		○ (추가내용)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 거실	○ 침실
	○ 의무실, 간호사실	○ (통합) 의료 및 간호사실
	○ 오락실	○ 프로그램실
	○ 노인공동생활가정도 2층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의무	○ (노인공동생활가정) 2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모든 침실을 1층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미설치 가능
2. 자격기준		(경과조치 2년 적용)
	○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무국장: 자격기준 없음	○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생활지도원	○ 요양보호사로 명칭 변경, 요양보호사 2급이상 소지자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로 한정(단, 간호인력 2인이상 필요한 경우, 1인은 반드시 간호사일 것)
3. 운영기준		(경과조치 없음)
	○ 영양사 없는 시설은 보건소장 협조	○ 영양사 없는 시설은 타 시설의 지도 협조도 가능

2.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본적으로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음.
- 기존의 일반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점차적으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자가 일반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적합한 서비스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준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입소정원 10인 미만의 시설에 한하여 별도의 명칭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일반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것으로 함.
 - ②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이는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체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이용함으로써, 토지나 건물의 원래 소유자의 의향에 따라 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손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③ 시설설비의 명칭은 용도에 부합되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으로 함.
 - ④ 시설설비의 설치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고, 형식적인 사용위주로 운영되는 설비에 한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적인 용도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으로 함.
 - ⑤ 시설설비 중에서, 서비스제공이 시설자체가 아닌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시설설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함.
 - ⑥ 개정된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5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⑦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서는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시설만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본인에게 높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종사자의 명칭은 가능한 한, 실제의 업무나 자격증에 고지되어 있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함.
- ② 시설의 서비스수준, 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즉, 현행 사회복지사의 유형이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3급 자격증의 폐지에정도로 2급 이상의 자격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상담 및 서비스계획(care plan)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상급(1급)의 자격기준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함.
- ③ 또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과의 자격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 ④ 직원의 배치수준은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는 직원으로 충당하고, 현행 시설운영비용의 국고지원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시설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⑤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허용하되, 허용되는 직종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겸직이 허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⑥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이 어려운 직원, 또는 유사업무의 세분화 및 효율도가 인정된 직종에 한해서는 축소 및 확대 조치를 함.
- ⑦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2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이상 주거복지시설과 동일**)

○ 셋째, 시설운영기준에 대해서는,

- ① 현재 시설의 여건과 실제적인 활용성을 근거로 현실성 있게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함. 즉, 의료인에 대한 범위는 의료법,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각각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함. (**※ 이상 주거복지시설과 동일**)

■ 상기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에 기초로 하여 개선된 시안은 본문을 참조바람.

〈표 2-2〉 주요 개선내용

기준	현행	개선안
1. 시설기준		(경과조치 5년 적용)
		○ (추가내용)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 거실	○ 침실
	○ 의무실, 간호사실	○ (통합)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치료실	○ 기능훈련실
	○ 오락실	○ 프로그램실
	○ 노인공동생활가정도 2층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의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모든 침실을 1층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미설치 가능
2. 자격기준		(경과조치 2년 적용)
	○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무국장: 자격기준 없음	○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생활지도원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
	○ 물리치료사	○ 기능훈련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에서 선택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로 한정(단, 간호인력 2인이상 필요한 경우, 1인은 반드시 간호사일 것)
3. 운영기준		(경과조치 없음)
	○ 영양사 없는 시설은 보건소장 협조	○ 영양사 없는 시설은 타 시설의 지도 협조도 가능

3. 재가노인복지시설

-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재가복지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단기보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단독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소규모의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설치, 직원배치 및 운영기준을 소규모의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함.
 - ② 시설설비의 명칭은 용도에 부합되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으로 함. 예를 들면, 취침이나 이용자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광의의 개념을 지닌 거실에서 침실로 바꾸는 것임. (단,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침실 이외에 넓은 휴식공간의 개념을 지닌 거실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 ③ 시설설비의 설치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고, 형식적인 사용위주로 운영되는 설비에 한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적인 용도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으로 함.
 - ④ 시설설비 중에서, 서비스제공이 시설자체가 아닌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시설설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함.
 - ⑤ 개정된 시설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5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둘째,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 ① 종사자의 명칭은 가능한 한, 실제의 업무나 자격증에 고지되어 있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함.
 - ② 시설의 서비스수준, 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즉, 현행 사회복지사의 유형이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3급 자격증의 폐지예정으로 2급 이상의 자격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상담 및 서비스계획(care plan)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상급(1급)의 자격기준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함.

- ③ 직원의 배치수준은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는 직원으로 충당하고, 현행 시설운영비용의 국고지원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시설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④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허용하되, 허용되는 직종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겸직이 허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함.
- ⑤ 실제로 시설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이 어려운 직원, 또는 유사업무의 세분화 및 효율도가 인정된 직종에 한해서는 축소 및 확대 조치를 함.
- ⑥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과기간(예, 2년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셋째, 시설운영기준에 대해서는,

- ① 현재 시설의 여건과 실제적인 활용성을 근거로 현실성 있게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계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함. 즉, 의료인에 대한 범위는 의료법,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각각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함.

■ 상기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에 기초로 하여 개선된 시안은 본문을 참조바람.

〈표 2-3〉 주요 개선내용

기준	현행	개선안
1. 시설기준		(경과조치 5년 적용)
	○ 거실	○ 침실(단기보호)
	○ 의무실, 간호사실	○ (통합)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치료실	○ 기능훈련실
	○ 오락실	○ 프로그램실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 (삭제함)
2. 자격기준		(경과조치 2년 적용)
	○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생활지도원	○ 영양보호사: 영양보호사 2급이상 소지자
	○ 물리치료사	○ 기능훈련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에서 선택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로 한정(단, 간호인력 2인이상 필요한 경우, 1인은 반드시 간호사일 것)
3. 운영기준		(경과조치 없음)
	○ 영양사 없는 시설은 보건소장 협조	○ 영양사 없는 시설은 타 시설의 지도 협조도 가능

제 3 장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 기준내용

제 1 절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내용 기준

1. 요양보호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허약 및 장애노인의 간병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전문인력이 사전적으로 양성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법적 근거하에 양성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자활간병인 등 기존 직종의 양성교육에 편차가 심하여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일반인에 의한 간병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하나의 직업으로써 유지,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간병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Basic ADL)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즉, 노인 요양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 및 복지수준을 제고시킴.
 - 특히, 향후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요양보호사의 기능과 역할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대상
 - 신체적 및 인지적 장애로 일상적 생활동작에 제한을 지닌 자로 간병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향후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시안)제도에서 간병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간병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여야 할 직무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는,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지원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간병수발과 관련한 내용임. 다시 말하면,
 - ① 식사동작 지원
 - ② 목욕동작 지원: 세수 및 양치질 돕기, 머리감기, 목욕돕기, 손·발톱 깎아주기 등
 - ③ 대·소변처리동작 지원: 침상에서 대·소변받기, 간이용변기 이용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성인용기저귀 교환돕기 등
 - ④ 옷 갈아입기동작 지원: 잠옷 갈아입히기, 평상복 갈아입기 등
 - ⑤ 이동동작 지원: 침상과 의자간 이동지원, 휠체어 이동 지원 등
 - ⑥ 욕창예방 지원: 체위교환
 - ⑦ 간단한 재활훈련: 산책 및 병원동행 지원, 보행훈련 지원 등
 - ⑧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 둘째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지원하여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함. 다시 말하면,
 - ① 집안일 지원: 정리정돈,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 ② 세탁지원: 빨래돕기, 이불 등 세탁물 말리기
 - ③ 물건사기 지원
 - ④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 ⑤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금전관리, 각종 연금수급 지원, 각종 서류 수속지원 등
 - ⑥ 기타 우애서비스: 말벗 등
- 셋째는, 신체적 간병수발 및 가사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병수발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함. 특히,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요양보호사 제도화의 기본방향

- 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 기존 또는 신규 인력양성기관을 활용하여, 통일된 교육 커리큘럼 기준을 마련
 - 교육내용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으로 구성
 - 전문 인력의 조기확보 : 기존 인력 최대 활용, 신규양성 최소화
 - ※ 기존 일정기준 이상 유자격자 및 경력자는 보수교육 등 별도의 교육과정
-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양성하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 1급과정: 가정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상담, 장기적 신체수발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 가능)
 - 2급과정: 가정에서 일상적인 가사지원 등 단순 요양서비스를 제공
- 인력 배치 활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만이 가능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함.

4.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방안(신규대상)

1. 1급 과정

가. 기본방침

- 첫째, 총 양성교육에 필요한 총시간은 120시간과, 15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는 단순한 이론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임.
- 둘째, 교육과정을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크게 3부분으로 설정하였음.
 - 이론강의 : 실기연습 : 현장실습의 비중에서 강의와 실기연습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실습에 중점을 두는 경우로 구분함.

- 셋째, 이론강의의 주요내용은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과 관련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타 복지, 간호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교육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 중에서 교과과목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간호분야(보건의료 포함)로 구분하였음. 사회복지분야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주요 대상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론,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에 따른 기초 및 전문지식, 사례검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고, 간호분야는 노인성 및 장애인질병과 관련한 기초적인 의학지식을 비롯하여 간호, 심리정신상태, 재활서비스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음.
- 넷째, 실기연습은 신체 간병수발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실기연습만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이론강의와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론강의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병기술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은 크게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의 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여기에서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복지시설로 하되, 일반(민간)요양병원에서의 실습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기간은 1주일(5일 근무 기준) 또는 2주일단위로 설정하였음.
 - 재가노인복지기관은 방문요양기관과 통원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방문요양기관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실습으로 하고, 통원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에서도 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 이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을 사전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나. 교육내용

- 양성교육(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1〉 대안별 장·단점 (1급 과정)

	기준안	참고 1안	참고 2안	참고 3안
이론강의	50	50	60	60
실기연습	40	40	30	30
현장실습	30	60	30	60
총시간	120	150	120	150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시간 교육으로 총 20일(1주 5일 기준)이 소요되어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끝낼 수 있다는 점 - 충분한 실기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 - 전체적으로 중년여성의 취업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일(5일 기준)의 현장실습으로 현장경험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 - 충분한 실기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시간 교육으로 총 20일이 소요되어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끝낼 수 있다는 점 - 1안에 비해 교육내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 - 전체적으로 중년여성의 취업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일(5일 기준)의 현장실습으로 현장경험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 - 2안에 비해 교육내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일(5일 기준)의 현장실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시간 교육으로 총 25일(1주 5일 기준)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교육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 실습장소의 종사자에게 업무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 전체적으로 중년여성에게는 다소 교육기간이 길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일(5일 기준)의 현장실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시간 교육으로 총 25일(1주 5일 기준)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교육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 실습장소의 종사자에게 업무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 전체적으로 중년여성에게는 다소 교육기간이 길다는 점

〈표 3-2〉 요양보호사 1급과정: 교육내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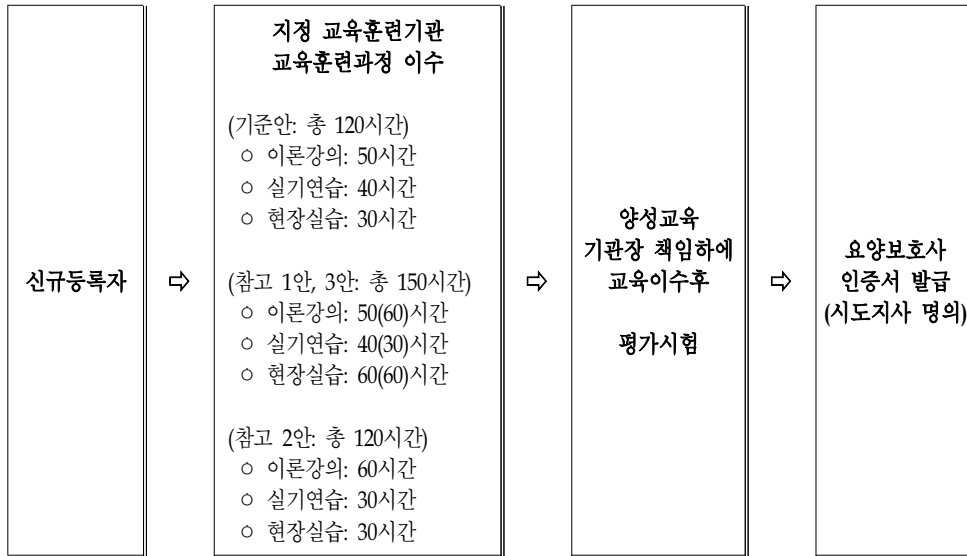
구분	교육과목명	교육 시간수	주요 교육내용
교육 강의 (50시간)	○ 사회복지제도관련 지식	(7)	
	① 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의 개념, 실천방법, 복지정책(제도)
	② 노인복지론	4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초의학관련 지식	(12)	
	① 노인·장애인 질병론	4	노인성질환 내용, 감염관리 이해 등
	② 노인간호론	6	가정간호, 응급처치 및 호스피스간호 내용
	③ 재활훈련론	2	물리 및 작업치료 훈련내용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관련 지식	(7)	
	① 노인·장애인 심리론	4	노인 및 가족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방법
	② 요양보호사자세론	3	전문직 종사자의 자세, 노인학대/인권보호법
	○ 수발서비스관련 지식	(18)	
	① 신체수발론	12	ADL 지원방법, 치매행동 대처법
	② 가사지원론	3	가사(영양식사, 세탁 등) 및 외출동행지원방법
	③ 수발복지용구 사용방법론	3	수발복지용구 유형 및 수발환경에 따른 사용법
○ 수발서비스지원관련 지식	(6)		
① 재가수발계획 수립지원론	4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작성지원	
② 보건복지서비스연계론	2	주요 보건복지제도내용 및 서비스연계론	
실기 연습 (40시간)	○ 수발기술 제공 연습	(34)	
	①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4	기본자세 숙달, 도구사용 훈련
	②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기술	30	ADL, IADL 관련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훈련
	○ 재가요양서비스계획 연습	(6)	
	① 사례검토	3	보건복지서비스연계, 간병사례 검토
② 재가요양서비스계획 수립지원	3	재가에서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수립지원	
현장 실습 (30시간)	○ 실습내용	(30)	
	① 노인요양시설 실습 (2일)	12	요양·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② 방문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3일)	18	방문요양기관, 방문목욕기관, 주·단기보호시설
합계		120	

다. 양성절차

■ 양성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규자(실무경력 1,000시간 미만 포함)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기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가시험을 거쳐 시도지사의 명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평가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론강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총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처리함.
 - 실기연습에 대해서는 실기훈련과정의 관찰, 또는 구두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합격 (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실습장소의 지도감독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합격 (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전체적으로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그림 3-1] 신규 1급과정 대상자



2. 2급 과정

가. 기본방침

- 첫째, 총 양성교육에 필요한 총시간은 4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는 현재 유급가정봉사원의 양성교육시간에 준하는 것임.
- 둘째, 교육과정은 1급과정과 동일하게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크게 3부분으로 설정하였음.
 - 이론강의 : 실기연습 : 현장실습의 비중은 4:4:2로 설정함.
- 셋째, 이론강의의 주요내용은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과 관련한 교육과, 기타 복지와 관련된 기초교육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 중에서 교과과목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간호분야(보건의로 포함)로 구분하였음. 사회복지분야는 주요 대상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론,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에 따른 기초지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고, 간호분야는 재가간호방법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음.
- 넷째, 실기연습은 신체 간병수발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실기연습만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이론강의와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론강의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병기술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은 크게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현장견학 및 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여기에서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복지시설로 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은 방문요양기관과 통원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방문요양기관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실습으로 하고, 통원요양기관(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등) 및 방문간호기관에서는 견학수준으로 실시함. 이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을 사전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나. 교육내용

■ 양성교육(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3〉 요양보호사 2급과정: 교육내용(안)

구분	교육과목명	교육 시간수	주요 교육내용
교육 강의 (16시간)	○ 보건복지관련 지식	(8)	
	① 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개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② 수발론	3	간병수발 개념, 노인심리
	③ 재가간호방법론	2	재가간호방법
	○ 노인수발방법관련 지식	(8)	
	① 홈헬프서비스입문	4	요양보호사의 자세, 대인원조기술
② 가사지원입문	4	가사지원 및 외출 동행 지원법	
실기 연습 (16시간)	○ 수발기술 제공 연습	(16)	
	①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4	기본자세 숙달, 도구사용 훈련
	②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기술	12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방법
현장 실습 (8시간)	○ 생활/재가시설 실습	(8)	
	① 노인요양시설 실습	3	요양 전문요양시설
	② 방문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5	방문수발기관, 방문목욕기관
합계		40	

다. 양성절차

■ 양성절차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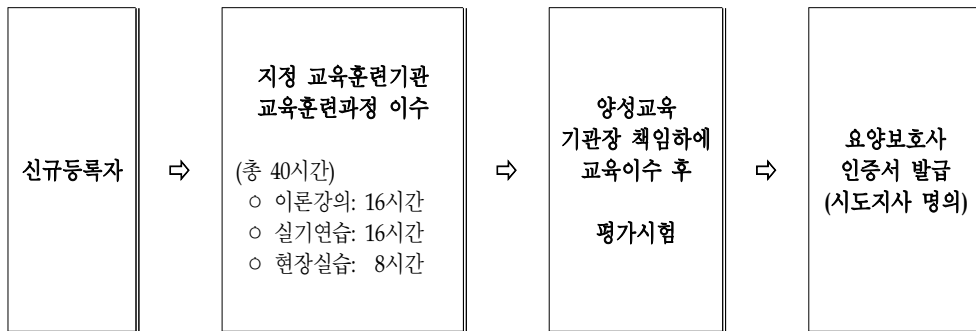
- 신규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기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시도지사의 명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평가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론강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총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처리함.

※ 사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합격기준: 60점 이상 (100점 기준)

- 실기연습에 대해서는 실기훈련과정의 관찰, 또는 구두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실습장소의 지도감독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전체적으로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그림 3-2] 요양보호사 신규 2급과정 대상자



5. 기존 장기요양보호부문 종사자의 인정방안(경력자 대상)

1) 실무경력 1,000시간 이상인 경우

■ 첫째, 총 양성교육에 필요한 총시간은 3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는 현장 경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시간을 생략하고,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시간을 신규 요양보호사 1급 양성교육시간(기준안)의 각각 50%,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함.

■ 둘째, 교육과정을 이론강의와 실기(연습)로 크게 2부분으로 설정하였음. 즉, 이론강의 :

실기연습의 비중에서, 이론강의에 중점을 두는 형태임.

- 셋째, 이론강의의 주요내용은 복지, 간호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교육과 요양보호사로써의 직업윤리관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넷째, 실기연습은 신체 간병수발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실기연습만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이론강의와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론강의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병기술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다섯째, 보수교육이후 시도지사의 명의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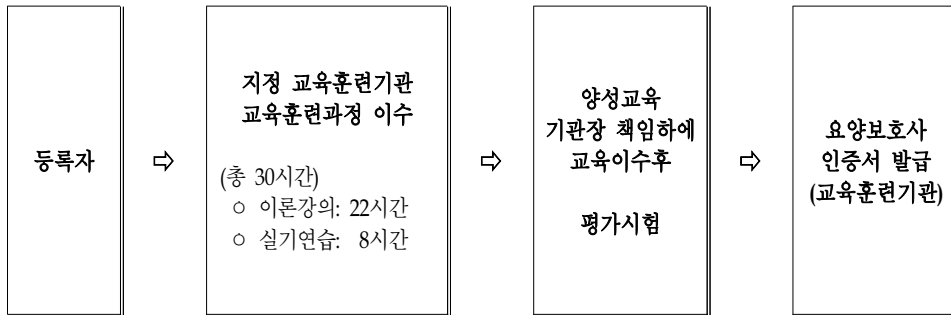
〈표 3-4〉 기존 경력자대상의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총 교육시간 30시간)

구분	교육과목명	교육 시간수	주요 교육내용
교육 강의 (22시간)	○ 사회복지제도관련 지식	(3)	
	① 사회복지론	1	사회복지의 개념, 실천방법, 복지정책(제도)
	② 노인복지론	1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③ 보건복지서비스연계론	1	보건복지제도 및 서비스연계방법
	○ 기초의학관련 지식	(13)	
	① 노인·장애인 질병론	4	노인성질환 및 감염관리 이해 등
	② 노인간호론	6	가정간호, 응급처치 및 호스피스간호 내용
	③ 재활훈련론	2	물리 및 작업치료 훈련내용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관련 지식	(6)	
	① 노인·장애인 심리론	3	의사소통방법, 노인 및 가족의 심리상태
② 요양보호사자세론	3	전문직 종사자의 자세, 노인학대/인권보호	
실기 연습 (8시간)	○ 수발기술 제공 연습	(6)	
	①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2	기본자세 숙달, 도구사용 훈련
	②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기술	4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방법
	○ 재가수발서비스계획 연습	(2)	
	① 사례검토	1	보건복지서비스연계, 간병사례 검토
	② 재가요양서비스계획 수립지원	1	재가에서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수립지원
합계		30	

다) 양성절차

- 양성절차는 기존 경력자(실무경력 1,000시간 이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기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함.
- 여기에서 경력자 요건이란,
 - 첫째, 경력자 인정기관에서 제도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미 1,000시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임(경과조치 사항). (※ 1,000시간 : 1일 8시간 · 월20일 · 6개월 소요)
 - 둘째, 신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자로 실무경험 1,000시간을 넘는 자임. 이는 현장실습을 그대로 인정하되, 이론강의 및 신규 실기연습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그리고, 경력자 인정기관에는 다음과 같음.
 - ① 의료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제외) 등
- 끝으로, 평가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론강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총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처리함. 이 때, 필기시험은 월 1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험문제는 시도별 시험문제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출제하는 것으로 함.
 - 둘째, 실기연습에 대해서는 실기관련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셋째, 전체적으로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도 3-3]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존 경력자 대상(1)



2) 실무경력 1,000시간미만이지만, 관계법령하에 양성된 인력의 경우(경과조치)

- 기본적으로 1,000시간 이상의 실무경력자에 준하되, 2년간의 경과조치로 운영하고, 보수교육이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첫째, 총 양성교육에 필요한 총시간은 3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는 현장경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시간을 생략하고,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시간을 신규 양성교육시간(1안)의 각각 50%,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함.
 - 둘째, 교육과정을 이론강의와 실기(연습)로 크게 2부분으로 설정하였음. 즉, 이론강의 : 실기연습의 비중에서, 이론강의에 중점을 두는 형태임.
 - 셋째, 이론강의의 주요내용은 복지, 간호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교육과 요양보호사로써의 직업윤리관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넷째, 실기연습은 신체 간병수발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실기연습만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이론강의와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론강의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병기술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표 3-5〉 교육내용(총 교육시간 30시간)

구분	교육과목명	교육 시간수	주요 교육내용
교육 강의 (22시간)	○ 사회복지제도관련 지식	(3)	
	① 사회복지론	1	사회복지의 개념, 실천방법, 복지정책(제도)
	② 노인복지론	1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③ 보건복지서비스연계론	1	보건복지제도 및 서비스연계방법
	○ 기초의학관련 지식	(13)	
	① 노인·장애인 질병론	4	노인성질환 및 감염관리 이해 등
	② 노인간호론	6	가정간호, 응급처치 및 호스피스간호 내용
	③ 재활훈련론	2	물리 및 작업치료 훈련내용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관련 지식	(6)	
	① 노인·장애인 심리론	3	의사소통방법, 노인 및 가족의 심리상태
② 요양보호사자세론	3	전문직 종사자의 자세, 노인학대/인권보호	
실기 연습 (8시간)	○ 수발기술 제공 연습	(6)	
	①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2	기본자세 숙달, 도구사용 훈련
	②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기술	4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방법
	○ 재가요양서비스계획 연습	(2)	
	① 사례검토	1	보건복지서비스연계, 간병사례 검토
	② 재가요양서비스계획 수립지원	1	재가에서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수립지원
합계		30	

■ 양성절차는 다음과 같음. 즉,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기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함.

○ 여기에서 해당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단, 이에 해당하는 자는 법 시행 이전의 3년이 내에 양성된 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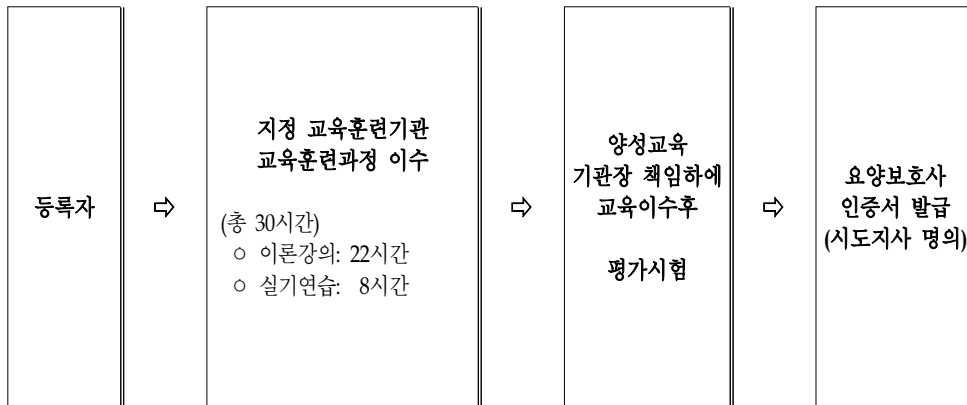
-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유급가정봉사원 (기존 40시간)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재활훈련기관협회에서 양성된 재활간병인 (기존 120시간)
- ③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양성된 간병인 (기존 60시간)

- 그리고 해당자의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① 의료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¹⁾
-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제외) 등

■ 평가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론강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총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처리함. 이 때, 필기시험은 월 1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험문제는 시도별 시험문제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출제하는 것으로 함.
- 둘째, 실기연습에 대해서는 실기관련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셋째, 전체적으로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도 3-4]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경력자 대상(II)



1) 자활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아닌 자활후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3) 기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부문의 유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방안

- 이는 정규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케어복지과 및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과 2급) 및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면서 법 시행이후 과거 최근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각 해당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과목이 본 요양보호사 1급 양성 교육과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과목은 아래와 같다.

〈표 3-6〉 노인복지관련 교과목

부문	교과목
복지부문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문제론, 사회복지심리학,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가정학개론, 건강가정론, 자원봉사론, 노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상담이론, 심리학개론, 의료사회사업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자료분석
보건부문	응급처치, 물리치료, 재활론, 작업치료, 영양학, 기본간호론, 노인간호론

- 둘째, 상기한 7과목이상 수료한 자로써 경력자 인정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관련서비스 업무에 1,000시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거친 이후에 요양보호사 1급으로 인정함.
- 셋째, 노인복지관련 7개 과목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였지만, 실무경력이 1,000시간을 넘는 자는 자격증 유형에 따라 19-30시간의 보수교육을 거친 이후에 자격증을 발급함.
- 넷째, 노인복지관련 7개 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1,000시간미만인 자는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50-70시간의 보수교육을 거친 이후에 자격증을 발급함.
- 다섯째, 노인복지관련 7개 과목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실무경력도 1,000시간미만인 자는 요양보호사 1급 신규과정(120시간)을 거친 이후에 자격증을 발급함.

〈표 3-7〉 기존 경력자에 보수교육 기준(요양보호사 1급 기준)

구분	실무경력 1,000시간 미만인 경우	실무경력 1,000시간 이상인 경우
○ 사회복지사 1급 ¹⁾ (4년제 대학) ○ 간호사 자격증자 ¹⁾ (3, 4년제 대학)	실기연습/현장실습 (50시간) (※실기연습: 2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120시간 보수교육 실시)	소정의 검정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19~20시간 보수교육 실시) (※사회복지사1급은 기초의 학 및 직업윤리관의 19시 간교육을 이수하고, 간호 사는 사회복지제도, 직업 윤리관 및 수발서비스지 원의 20시간을 이수함)
○ 사회복지사 2급 ¹⁾ (4년제 대학)	실기연습/현장실습 (50시간) (※실기연습: 2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120시간 보수교육 실시)	소정의 검정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이론 ·실기의 30시간 보수교육 실 시)
○ 사회복지사 2급 ¹⁾ (2년제 대학(원)) ○ 케어복지사 1급 ¹⁾ (2년제 대학)	실기연습/현장실습 (70시간) (※실기연습: 4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120시간 보수교육 실시)	소정의 검정 (7개 과목 미 이수자는 이론 ·실기의 30시간 보수교육 실 시)
○ 유급가정봉사원 ²⁾ (노인복지법) ○ 자활간병인 ²⁾ (국기법) ○ 적십자사간병인 ²⁾ (대한적십자조직법) ○ 간호조무사자격증 ³⁾ 소지자	이론/실기연습/현장실습 (60시간) (※이론/실기: 3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이론/실기연습 (30시간)

주: 1)노인복지관련 7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2)제도시행 이후 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함.

3)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7. 요양보호사 자격증(1급 및 2급) 소지자의 보수교육 방안

- 이는 본 요양보호사(1급, 2급)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신기술 및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내용 등 최신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1회(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둘째, 교육내용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으로 실시함. 여기에서 이론강의 내용은 주로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법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하여 기존 방식에 비하여 우수한 방법기술이 개발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교육 및 실기연습을 하도록 함.
 - 셋째, 보수교육은 신규 자격 취득 후 또는 보수교육 후 1년이 도래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고, 보수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함.
 - 넷째, 보수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 ① 정부지정 요양보호사양성교육훈련기관
 - ②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및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③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 ④ 대한적십자사

제 2절 요양보호사의 교육양성기관 설치기준

- 기본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등록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등록증 교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한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및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그리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고 수강료 수납액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

-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정부지원 교육기관(가정봉사원교육훈련기관, 자활후견기관), 간호학원, YWCA, 적십자사, 간병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은 시설·교육기자재(강의실, 실습실, 교육용기자재) 및 인력기준(실무전담인력, 교육 강사요원) 등을 갖추도록 함.

〈표 3-8〉 요양보호사 교육양성기관 기준(시설설치 기준)

구 분	시설기준
기본 시설	1. 강의실 : 60㎡ (교육인원 1인당 1.5㎡ 기준) ○ 단, 1개의 강의실 당 40명을 상한선으로 설정함. 2. 실기연습실 : 80㎡ (교육인원 1인당 2㎡ 기준) ○ 단, 1개의 강의실 당 40명을 상한선으로 설정함. 3. 강의실과 실기연습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80㎡ 이상이어야 함. 4.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채광·환기·냉난방시설 등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시설
교구	1. 인체모형, 이동식침대, 휠체어, 전신욕조 각각 1개 이상 2. 간호용품, 이동용품, 재활치료용품, 식사지원용품, 배변 및 의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개씩 이상 갖추 것 3.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

〈표 3-9〉 요양보호사 교육양성기관 기준(교수요원 기준)

구 분	교수요원 수	자격기준
전임 강사요원	1인 이상	노인복지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 강사요원		1. 노인복지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노인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인자 3. 간호사,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제 4 장 결론

- 우리나라는 2008년도를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을 지정,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결국,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장기요양대상자라기 보다는 경증상태의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편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음.
 -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물리적 시설환경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서비스의 내용 정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개정이 요구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